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배출량 검증기관[2차] 모집공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배출량 검증기관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 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규모) 총 검증 지원 예산 880백만원 (110개사 내외)
-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2. 추진근거 및 체계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운영지침

□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예산교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지원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사업진행 협조 • 탄소배출량 검증 수혜 및 온실가스 감축 수행
컨설팅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취합 •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제출 및 검증 대응
배출량 검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 CBAM 도입국 요청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

3. 검증기관 역할 및 자격

□ (역할정의)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 (운영방식) 배정*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검증 지원

* 시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기업과 배출량 검증기관을 매칭

- (지원금액) 지원기업 당 최대 8백만원*

* 검증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까지 지원, 나머지는 지원기업 부담

□ (신청자격) EU CBAM 전환기간 이행 규정을 만족하는 적격 검증기관* 중 아래 필수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ISO14065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

- (필수조건) 최근 3년 이내 ISO14067 및 ISO14044에 의한 탄소 배출량 검증 실적*을 보유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 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또는 ISO14044(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으로 명시된 실적만 인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실적으로 불인정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동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 (제외대상)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 중인 기업 및 기관
- ◆ 휴·폐업 기업 및 기관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 및 기관
-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법인 및 대표자)
-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불가능한 기업 및 기관
- ◆ 지원기업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검증 참여인력이 컨설팅 수행기관의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기업 및 기관

4. 검증기관 신청

□ (신청방법) 이메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신청서류 첨부)

□ (신청기간) '24. 05. 07.(화) ~ 05. 17.(금) 16:00까지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검증기관 참여 제안서(붙임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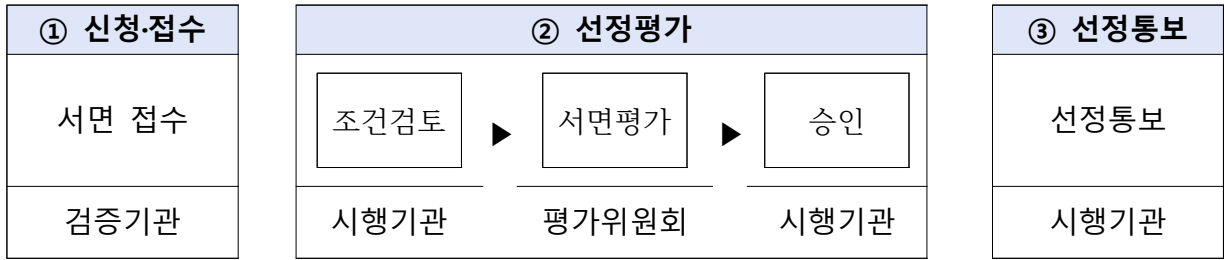
신청서류		참고
①	검증기관 참여 제안서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항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기관)은 신청자격이 제한됨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개인 각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
④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필수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재되지 않은 서류 불인정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월 기준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인정

5. 검증기관 평가

-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 수행실적 및 참여인력, 사업 수행 및 관리 계획, 고객지원으로 구성

* (별첨2) 검증기관 선정평가표 및 계량평가기준 자료 참조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 (선정통보)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사업일정에 따라 통보일이 지연될 수 있음

- (선정기관 수) 최대 2개 기관 선정

* 서명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6.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854, 9774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검증기관에게 있음

붙임 1**검증기관 신청서류****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배출량 검증기관 참여 제안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설 립 일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대 표 자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담 당 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기업 현황 (년)	총 업 원 수 (4대보험 가입자)	참 여 인 력 수 (인)
	자산총계(백만원)	매 출 액 (백 만 원)
	자본총계(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부채총계(백만원)	부 채 비 율 (%)

신청 자격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동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	--------------------------	--

위와 같이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배출량 검증기관 참여를 신청하며, 상기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4. 사업 수행계획(양식1) 5. 참여인력 이력사항(양식2)
6. 사업실적증명서(양식3) 7. 보안각서 및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양식4,5)
8. 정보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양식6~8)

1. 배출량 검증기관 사업 수행계획

□ 기관개요 및 사업수행능력

설립목적	○ ○
기업연혁	○ '01.11. 8 ○○○ 창립 ○ '02. 6.15 ○○○○ 현 대표이사 취임
주요사업	○ ○
조직현황	※ 탄소배출량 검증 조직 구성 등
운영역량	※ 검증기관 운영 지속가능성(재무 기반 작성)
보유기술	※ 기술, 설비, 인증, 특허 보유 현황 등

□ 수행실적 및 참여인력

구분	수행실적(건)	수행실적(최근 3년간) 보유인력(명, '24.5 기준)
최근 3년간 탄소배출량 검증* 실적 (제품별)		

* 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또는 ISO14044(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으로 명시된 실적만 작성,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실적으로 불인정

사업 수행 · 관리계획

<p>사업 수행계획</p>	<p>※ 사업수행 및 인력투입 계획, 효율적 검증 추진 방안 등</p>
<p>사업 관리계획</p>	<p>※ 일정 관리, 데이터 및 보고서 관리, 보안 관리 방안 등</p>

고객지원 계획

<p>고객지원</p>	<p>※ 사후관리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p>
--------------------	------------------------------

2. 참여인력 이력사항(검증기관)

※ 검증 수행인력 전체 개별 작성

사진	성 명		직위(직책)	
	참여사업 담당업무		기존업무	
	주 소			
	E - Mail		휴 대 폰	

	기 간	학 교 명	학 과 명	전 공	학 위
학력사항 (고등학교 이상 학력작성)	`00.00.00~`00.00.00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경력 (최근 경력부터 작성)	`00.00.00~`00.00.00				

	기 간	사 업 명	검증기준*	담당업무	비 고
최근 3년간 검증실적	`00.00.00~`00.00.00		14067(PCF)		

	발 급 일 자	자 격 증 명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비 고
자격증	`00.00.00~`00.00.00				

* 14067(PCF), 14044(LCA) 中 선택(타 문구 작성 시 불인정), 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또는 ISO14044(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으로 명시된 실적만 입력)

**<제출서류> 참여인력 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사업실적증명서(검증기관)

관련실적 해당분야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input type="checkbox"/> 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검증으로 명시된 실적				
		<input type="checkbox"/> ISO14044(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으로 명시된 실적				
신 청 인 (검증기관)	기 업 명 : (인) (전화번호 :)					
	영업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용역) 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명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 기업/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업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검증의견서(성명서)' 제출 시 인정(민감정보는 마스크) 2.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검증의견서(성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사본과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시 제출 시 인정 3. 사업(용역)이행실적은 용역범위 및 기준(수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4. 사업실적증명서의 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신청인의 날인이 편집/조작된 경우 사업실적으로 불인정하며, 허위로 실적을 제출 시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배출량 검증기관 참가 자격을 제한함 						

* 신청일 포함 최근 3년 내 수행실적만 인정

** 사업실적증명서는 양식에 맞게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직인 필수)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계약서에 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또는 ISO14044 (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으로 명시된 건만 인정

****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검증실적으로 불인정

4. 보안각서(검증기관)

참여인력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서명

상기자는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동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에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검증기관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6.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검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검증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서비스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수행분야, 수행실적, 수행 후 등급평가결과, 참여제재결과 등)를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신청서, 등록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참여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시행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신용조회사실이 귀 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검증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 목적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를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IBK기업, Sh수협, 전북, DGB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제일, 한국씨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한국수출입, KDB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p>제공받는 자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스케일업금융 참여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IBK기업, Sh수협, 전북, DGB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제일, 한국씨티,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한국수출입, KDB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p>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이익공유형 대출의 영업이익 적정성 점검용역 수행 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p>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p>제공·조회 대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p>제공·조회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p>제공·조회 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p>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p>	<p>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p>	<p>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024년 월 일

<p>기업체명</p>	<p>대표자</p>	<p>(인)</p>
<p>법인등록번호</p>	<p>연락처</p>	<p>010- -</p>
<p>사업자등록번호</p>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히 숙지함은 물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 2

검증기관 선정평가표 및 계량평가기준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배출량 검증기관 선정평가표

검 증 기 관		평 가 일	20 . .
평 가 점 수		평가위원	(서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평점
사업수행능력 (20)	조직 현황, 운영 역량, 보유 기술 등	20	16	12	8	4	
수행실적 및 전담인력 (40) [계량]	최근 3년간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ISO14067 또는 ISO14044) 실적	20	16	12	8	4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ISO14067 또는 ISO14044) 실적(최근 3년간) 보유 참여인력 확보 수준	20	16	12	8	4	
수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20)	사업 수행 및 인력·시스템 투입 계획, 효율적 검증 추진 방안	10	8	6	4	2	
	데이터 및 보고서 관리 방안, 보안유지 방안 등	10	8	6	4	2	
고객지원 (20)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20	16	12	8	4	
평가의견							
총 점		()점					

수행실적 및 전담인력(40점) 계량평가기준

지표명 (1) 최근 3년간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실적 (20점)

[지표개요]

- 최근 3년간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실적(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또는 ISO14044(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이라고 명시된 실적만 인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실적으로 불인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	A(20점)	B(16점)	C(12점)	D(8점)	E(4점)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최근 3년간)	12건 이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 동일 년도 하나의 사업장(공장)에 여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 하였더라도 한건으로 인정

지표명 (2)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실적 보유 참여인력 확보 수준 (20점)

[지표개요]

- 최근 3년간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실적(ISO14067(또는 탄소발자국 또는 PCF) 또는 ISO14044(또는 전과정 또는 LCA) 검증이라고 명시된 실적만 인정)을 보유한 인력 확보 현황 (*24.5 기준 확보 인력),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실적으로 불인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	A(20점)	B(16점)	C(12점)	D(8점)	E(4점)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최근 3년간) 실적 보유 인력 확보	8명 이상	6명 이상	4명 이상	2명 이상	2명 미만